

신학대학원 경건훈련 지침

제1조 (목적) 이 지침은 대학원 학칙 제 29조 1항 및 대학원 학위수여규정 3조 3항에 규정된 경건훈련에 관한 세부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경건훈련 내용) 전조의 경건훈련은 다음 각 항의 내용을 수행함으로 뜻한다.

1. 생활관 입사 및 생활

- 1) Master of Divinity과정(이하 “M.Div. 과정”이라 한다)에 입학한자는 입학년도 1학기를 의무적으로 생활관에 입사하여 경건훈련을 받아야 한다.
- 2) 다음에 해당하는 학생은 교역처장의 허락을 받아 면제 또는 대체할 수 있다.
 - 담임목사, 부목사, 전담전도사는 후보 제출로 면제
 - 기혼 여학생 및 가정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황으로 생활관 의무 입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기혼남학생으로써 생활관 의무 입사 교육과 새벽 기도로 대체할 수 있다.
 - 학부 출신자 중 의무 입사 이수자(의무입사이수 확인)

2. 채플 참석

- 1) M.Div. 과정 재학생은 매주 정규채플에 의무적으로 참석하여야 한다.
단, 목회 하고 있는 목사는 자율로 하며, 단독 목회 중인 전도사는 주 1회 자율, 주 1회 의무참석 해야 한다.
(제출서류 - 목회하고 있는 목사 중 처음 제출자 : 목사안수증, 후보
그 다음 학기 부터는 매 학기 후보 제출
단독 목회 중인 전도사 중 처음 제출자 : 승인증명서, 재직증명서, 후보
그 다음 학기 부터는 매 학기 후보 제출)
- 2) 채플에 불참한 자에게는 감점제를 실시하여 학생이 받을 수 있는 제반 혜택을 제한 받는다.
- 3) 모든 재학생은 채플 참석시 경건훈련표를 교부받아 제출하여 출석상황을 점검 받아야 한다.
- 4) 특별한 사정으로 채플에 불참하게 될 시는 사유서를 제출하여 허락을 받아야 한다.

3. 특별집회 참석

- 1) M.Div. 과정 재학생은 본 대학이 수시로 실시하는 신앙수련회, 퇴수회 및 기타 집회에 의무적으로 참석하여야 한다. 단, 목회하고 있는 목사는 자율적으로 한다.
- 2) 특별한 사정으로 특별집회에 불참하게 될 시는 사유서를 제출하여 허락을 받아야 한다.

4. 개인생활

M.Div. 과정 재학생은 다음과 같은 생활태도를 지녀야 한다.

- 1) 교회에 성실하게 출석하여 봉사하여야 한다.

- 2) 공손한 언어와 절제 있는 생활을 하여야 한다.
- 3) 신학을 전공하는 학생으로서 규범을 지키며 품위 있는 생활을 하여야 한다.
- 4) 위 1),2),3)항의 위배된 자는 경건훈련위원회에 회부한다.
- 5. 교목의 신분
중, 고등학교 교목의 교역자 신분은 교단의 기준에 준하여 전임전도사 이상의 신분으로 하다.

제3조 (평가 및 벌칙)

- 1. 위 제 2조 각 항의 수행상태가 불량한 자에 대해서는 1차 경고하고 계속하여 불량하다고 판단될 시는 결석회수에 따라 처리한다.
- 2. 결석회수에 따른 제재조치
 - 1) 생활관은 별도의 기준에 따라 평가 및 제재조치를 시행한다.
 - 2) 채플 평가 및 벌칙(한 학기)

결석회수	결 과	제 재 조 치
3	경 고	출석상황 통보
5	경건훈련 불 합 격	1) 본인에게 통보와 함께 차후 장학금 수혜자격상실 또는 지급 중지 2) 학생회 임원 및 학생자율단체(동아리) 임원자격 상실 3) 차기 학기 생활관 입사 불허

- * 3회를 지각할 경우는 1회 결석으로 처리한다.
- * 한 학기 결석회수가 전체의 1/2이하로 불합격한 경우에는 방학기간 중 교역처에서 정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함으로써 합격처리 받을 수 있다.

3) 특별집회(신앙수련회)평가 및 벌칙(한 학기)

결석회수	결 과	제 재 조 치
2	불합격	1) 본인에게 통보와 함께 차후 장학금 수혜자격상실 또는 지급 중지 2) 학생회 임원 및6 학생자율단체(동아리) 임원자격 상실 3) 차기 학기 생활관 입사 불허

- ① 특별집회(신앙수련회) 6회를 기준으로 하되, 집회 회수가 달라질 경우 사전 공지를 한다.
- ② 3회 지각일 경우는 1회 결석으로 처리한다.

3. 부정행위 처벌

- 1) 경건훈련 카드 제출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한 자는 그 해당학기의 경건훈련(채플, 신앙수련회, 퇴수회 및 기타집회)을 무효 처리 한다.
- 2) 위 결정된 사항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경건훈련위원회에 회부한다.
- 3) 부정행위 의뢰자와 이를 수락하여 행한자 모두 동등하게 처벌한다.

제4조 (공결) 사유서 및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출석을 대신 할 수 있는 공결사항은 다음과 같다.

1. 직계가족(조부모, 부모, 배우자, 자녀, 형제자매)의 사망시
2. 병무신체검사시
3. 예비군 훈련시
4. 학교가 허락하는 특별행사 및 교육실습 참가시
5. 병원이 증명하는 병환시
6. 천재지변시
7. 기타 면담을 통해 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

제5조 (경건훈련 이수과정)

1. 재학생 경건훈련
 - 1) M.Div. 과정 재학생은 의무적으로 입학 후 최초의 5학기, 인정자는 3학기 동안 채플, 신앙수련회, 퇴수회 및 기타집회에 참석해야 한다.
단, 마지막 학기에는 자율참석이며, 재학중 경건훈련 불합격자는 청원서 제출 후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.
 - 2) 신입생 수련회 1회 참석
 - 3) 생활관 의무입사 1학기 이수
2. 편입생 경건훈련
 - 1) 편입한 학기부터 의무적으로 채플, 신앙수련회, 퇴수회 및 기타집회에 참석해야 한다.
단, 마지막 학기에는 자율참석이며, 재학 중 경건훈련 불합격자는 청원서 제출 후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.
 - 2) 신입생 수련회 1회 참석
 - 3) 생활관 의무입사 1학기 이수
3. 재입학생 경건훈련

재입학은 학칙 제 11조에 적용된다.

 - 1) 재입학한 학기부터 의무적으로 채플, 신앙수련회, 퇴수회 및 기타집회에 참석해야한다.
단, 마지막 학기에는 자율참석이며, 재학 중 경건훈련 불합격자는 청원서 제출 후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.
 - 2) 신입생 수련회 1회 참석
 - 3) 생활관 의무입사 1학기 이수

제6조 (지침의 개정) 본 지침은 경건훈련위원회 제청과 신학대학원 교수회의 결의로 제정 및 개정할 수 있다.

제7조 (경과조치) 이외의 세부적인 사항은 교역처의 결정에 따른다.

부 칙(1)

1. 이 개정 지침은 2003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.